변 경 대 비 표

■ 펀드명 : 하나기금형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■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6 년 10 월 30 일

■변경사유

- 종류 C-P2I 수익증권 최초 가입자격 금액 인하

■신탁계약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최초 가입자격 금액 인하	**①~**②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2.(생략) 13. 종류 C-P2I 수익증권: 최초 가입시 **30 억**원 이상 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을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 14. (생략)	①~②(생략)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2.(생략) 13. 종류 C-P2I 수익증권: 최초 가입시 **10 억**원 이상 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을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 14. (생략)

■간이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변경내역 없음

■투자설명서 변경사항

구 분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1. 가. 2) 종류별 가입자격	최초 가입자격 금액 인하	C-P2I: 최초 가입시 **30 억**원 이상 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	C-P2I: 최초 가입시 **10 억**원 이상 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

		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정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을 통해 가입한 자는 제외)	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정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을 통해 가입한 자는 제외)